

「児童手当」の申請について

[아동수당] 신청에 관하여

1 児童手当は次のような場合に支給されます

1 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됩니다.

(1) 児童手当制度とは？

日本国内に住民登録をしている方で、支給対象となる子どもを養育している方に手当が支給されます。
 なお、父母が共に子どもを養育している場合は、原則、所得の高い方が受給者になります。

(1) 아동수당제도란?

日本国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한편,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수급자가 됩니다.

(2) 支給対象となる子ども

0歳から中学校修了までに相当する年齢の子ども（15歳になった最初の3月31日まで）が対象になります。

なお、海外に住んでいる子ども（留学の場合を除く※）は原則支給対象にはなり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留学を理由に海外に住んでいる場合は、以下の要件を全て満たし、留学に関する必要書類を提出すれば支給対象となります。

- 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前日までに日本国内に継続して3年を超えて住所を有していたこと
- 教育を受けることを目的として海外に居住しており、父母（未成年後見人がいる場合はその未成年後見人）と同居していないこと
- 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日から3年以内であること

(2) 지급대상이되는 아동

0세부터 중학교 졸업에 상당하는 연령의 아동(15세가 된 첫해의 3월 31일까지)이 대상이 됩니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유학의 경우 제외*)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학과 관련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일본 국내 주소를 지니지 않게 된 전날까지 일본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지를 지니고 있었을 경우.
- 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미성년자 후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미성년자 후견인)와 동거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본 국내 주소를 지니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3) 支給金額

子ども1人につき、以下のとおり支給されます。

(支給対象年齢)	(支給月額)
0歳～3歳未満	15,000円(一律)
3歳～小学校修了前	10,000円(第1子・第2子) 15,000円(第3子以降)
中学生	10,000円(一律)
所得制限を超える場合(※)	5,000円(一律)

※所得制限の基準は、扶養親族の人数や各種の控除により変わります。詳しくは4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3) 지급금액

아동 1 명당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연령)	(지급월액)
0세~3세미만	15,000(일률)
3세~초등학교 졸업전	10,000(첫째 아이, 둘째 아이) 15,000(셋째 아이부터)
중학생	10,000(일률)
소득제한이 넘을 경우(※)	5,000(일률)

※ 소득제한의 기준은 부양가족의 인원수와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것은 4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支給時期及び方法

年3回の支払月(6月、10月、2月)に、その前月までの4ヶ月分の「児童手当」が支給されます。子どもを養育している方名義の口座に振り込まれます。

(4) 지급시기 및 방법

연 3 회로 정해진 지불달(6 월, 10 월, 2 월)에 그 전달까지 4 개월 분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 児童手当を受け取るためには、申請が必要です

2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1) 児童手当の支給を受けるためには、申請が必要です。手当を受けたい方は「児童手当認定請求書」に必要なことを記入し、(2)の書類と一緒に、4の申請窓口に申請してください。市区町村が申請内容を確認し、認定した場合に手当が支給されます。

(1)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당을 받고자 하는 분은 [아동수당인정청구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2) 서류와 함께 4의 신청창구에 신청하십시오. 시구초무라(市区町村)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인정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2) 申請する時に「児童手当認定請求書」と一緒に提出するもの

- 申請する人の健康保険証(健康保険に入っている場合)の写し
- 振り込み先の預金通帳の写し(申請者本人の口座に限ります)

※その他、必要に応じて書類の提出を求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 (2) 신청 시 [아동수당인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복사
 - 입금계좌용 통장의 복사 (신청자 본인의 계좌에 한함)
- ※그 외, 필요에 따라 다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原則として、申請のあった月の翌月分から支給されます。

(3) 원칙적으로 신청달의 다음달 분부터 지급됩니다.

(4) 「児童手当」の支給を受ける方は、養育状況や所得の確認のため、毎年6月に、「現況届」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未提出の場合は、手当が受けられなくな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現況届」については、4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 (4)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분은, 양육상황과 소득확인을 위하여 매년 6월에 「현황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의 경우, 수당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신고」에 대해서는, 4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お願い

3 당부의 말씀

次のような場合には手続きが必要です

- 住所が変わったとき (他の市区町村に転居した場合、新しい住所の市区町村で、改めて児童手当の申請が必要です。)
- 本人又は、対象の子どもが出国するとき
- 子どもを養育しなくなったとき
- 子どもと別居するとき
- 出生や死亡などで、児童手当支給の対象となる子どもの数が変わったとき
- 振込先の口座を変更するとき (新しい振込先は、申請者本人の口座に限ります。)
- 受給者が公務員になったとき
など

※出生や、他の市区町村へ転出する場合は、その翌日から15日以内に手続きをしてください。手続きが遅れた場合、手当の支給を受けられない月が発生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른 시구초무라(市区町村)로 이사를 한 경우, 새로운 주소의 관할행정기관에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대상 아동이 출국할 경우
- 아동의 양육을 하지 않게 된 경우
- 아동과 별거하게 된 경우
- 출생 및 사망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아동의 수가 변경된 경우
- 입금계좌가 변경될 경우(새로운 입금계좌는 신청자 본인의 계좌에 한합니다.)
- 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 등

※출생이나 다른 시구초무라(市区町村)로 전출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수속이 지연된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お問い合わせ先（申請窓口）

4 문의처 (신청창구)

住民登録をしている各区役所こども家庭支援課<北須磨支所管内にお住まいの方は北須磨支所保健福祉課>・北神保健福祉課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주민등록이 있는 각 구청의 아동가정지원과 <기타스마 지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기타스마지소 보건복지과 > ・ 호쿠신복건복지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